[별표 7]

국제교류장학금 지원기준 (제6조 관련)

선 정 기 준	지 원 내 역
▷ 대상자: 교환학생프로그램, 복수학위프로그램 등 학술교류협정으로 선정되어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재학생 또는 본교에서 수학 하는 외국인 학생	수업료 전액 체류비용 일부 지원

- 1) 국제교육본부 등 소관부서의 자체 선발계획에 의함
- 2)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도 수혜 가능(단,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제외)